##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82

발의연월일: 2021. 11. 12.

발 의 자:김기현·강기윤·강대식

강민국・구자근・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김도읍

김미애・金炳旭・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김용판 · 김 응 · 김은혜

김정재 · 김태호 · 김태흠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박완수 · 박 진 · 박형수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서범수・서병수・서일준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종배・이종성・이주환 이채익・이철규・이헌승 임이자・장제원・전주혜 정경희・정동만・정운천 정점식・정진석・정찬민 정희용・조경태・조명희 조수진・조태용・조해진 주호영・지성호・최승재 최춘식・최형두・추경호 태영호・하영제・하태경 한기호・한무경・허은아 홍문표・홍석준・홍준표 황보승희 의원(10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정치적 행위능력을 명백히 인정받아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국민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음.

이미 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 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25歲"를 각각 "18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
	승)
② 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	② <u>18</u>
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3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	<u> 18세</u>
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	
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	
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	
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